

호주산 망고 생과실 위험관리방안

□ 위험관리방안 요구 대상 병해충

○ 검역병해충(금지해충 포함) 14종

-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등 과실파리 10종
 - *B. aquillonia*, *B. cucumis*, *B. fraunenfeldi*, *B. jarvisi*, *B. kraussi*,
B. murrayi, *B. neohumeralis*, *B. opillae*, *B. tryoni*, *C. capitata*
- *Deanolis albizonalis*(명나방 일종)
- *Sternochetus mangiferae*(망고씨바구미)
-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세균 일종)
- *Cytosphaera mangiferae*(진균 일종)

□ 위험관리방안 개요

- 호주 식물검역당국(이하 AQIS)에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 시설에서 생산된 호주산 망고 생과실에 대해서만 수입허용
- 퀸슬랜드과실파리 등 10종의 과실파리에 대해서는 등록된 증열처리 시설에서 과육온도 47℃ 이상 15분간 증열처리 되고 우리측 식물 방역관의 현지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만 수입허용
- 망고씨바구미 및 병원균 2종에 대해서는 지정된 대한민국 수출과원에서 재배 중 예찰을 통해 효과적인 방제가 실시되었음이 보장되어야하고 양국 합동 수출검사를 통해 동 병해충 미검출 시에만 수입허용
 - 수출입검사에서 발견시 해당 과수원산 생과실 당해 시즌 수출 제한

- *D. alizonalis*(명나방 일종)은 현재의 발생분포 상황이 변화하는 경우 우리측에 즉시 통보되어야 하고, 유입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어야만 수입허용

첨부. 호주산 망고 생과실 수입금지 제외 기준안 1부.

호주산 망고 생과실 수입금지제외기준안

1. 품목 및 대상지역

호주에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생과실

2. 수송방법

항공화물, 선적화물

3. 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의 등록

3.1 한국 수출용 망고를 생산하는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이하 “AQIS”)에 등록하여야 한다.

3.2 AQIS는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의 목록을 매년 수출 14일 전 한국 식물검역당국(이하 “NPQS”)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우려병해충에 대한 과수원 예찰 및 관리

4.1 AQIS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망고씨바구미(*Sternochetus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 및 *Cytosphaera mangiferae*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예찰을 통해 효과적인 방제가 실시되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S. mangiferae*에 대해서는 생산기간 중 모범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집중 관리하되, 산란초기 예찰에서 발견 시에는 적절한 살충제가 살포되어야 한다.

4.2 AQIS는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된 과수원에서 실시한 병해충 예찰 및 방제조치 결과를 NPQS 방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3 NPQS 방역관은 예찰 및 방제결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재배지에서의 우려병해충 발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4.4 호주 농림수산물부(이하 “DAFF”)는 *Deanolis albizonalis*의 현재 발생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NPQS에 통보한다.

4.4.1 *Deanolis albizonalis*의 발생상황 변화, 수출입검사에서 발견 등 유입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NPQS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4.5 DAFF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기타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NPQS에 통보한다.

5. 과실판리에 대한 증열처리

5.1 대한민국 수출용 망고는 AQIS의 승인을 받은 증열처리 시설에서 과육 온도 47℃ 이상에서 15분간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5.2 증열처리시설의 온도감지기는 주기적으로(1회/1개월) 교정하여야 하며, 오차 범위는 $\pm 0.3^{\circ}\text{C}$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5.3 증열처리 시 온도감지기는 과실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적재된 화물의 상, 중, 하부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감지기의 온도가 47℃에 도달한 시점부터 처리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증열처리시설의 외부에는 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4 AQIS는 매회 증열처리과정에 입회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5.5 AQIS는 NPQS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증열처리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선과 및 포장 장소

6.1 AQIS는 선과 및 포장장소의 식물위생상태를 매년 수출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6.2 AQIS는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산 과실만 선과장으로 반입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3 포장장소에는 과실판리가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7. 증열처리 후 포장 및 운송과정에서의 조치

7.1 증열처리된 과실의 포장상자에 구멍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7.1.1 개별 포장상자의 모든 구멍을 1.6mm이하의 망으로 덮기

7.1.2 파렛트 전체를 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

7.1.3 증열처리시설이나 방충시설이 된 보관장소에서 컨테이너로 직접 적재

7.2 증열처리된 생과실을 증열처리시설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 시에는 밀폐된 수송매체(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직경 1.6mm이하의 망으로 차단)를 사용하거나, 7.1.1항이나 7.1.2항의 방법으로 포장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7.3 과실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에는 AQIS 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화물의 경우에는 AQIS의 승인을 받은 방법("Plant Quarantine Australia"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각 상자별로 봉인할 수 있다.

8. 표시

8.1 각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는 “대한민국 수출용”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8.2 각 포장상자에는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의 이름/코드가 표시되어야 한다.

9. 수출검사

9.1 AQIS는 과실의 재감염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수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2 AQIS는 증열처리 후 포장된 과실 상자의 2%에 대하여 검역병해충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9.3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양측이 동의할 때까지 해당 증열처리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어야 한다.

9.4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 *Cytosphaera mangifera*, *Sternochetus mangiferae* 및 *Deanolis albizonalis*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양측이 동의할 때까지 당해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의 수출이 중단되어야 한다.

9.5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10. 검사증명서

10.1 AQIS는 증열처리 및 수출검사에 합격한 화물에 대해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10.2 검사증명서의 소독처리란에는 증열처리시설명, 일자, 온도 및 처리시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10.3 검사증명서에는 “이 화물은 NPQS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사결과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부기하고,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1. 현지검사

11.1 한국 식물방역관은 망고의 증열처리(제5조) 및 수출검사(제9조) 과정에 입회하여 AQIS와 공동으로 증열처리과정 확인 및 수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2 한국 식물방역관은 검사에 합격한 화물의 검사증명서 이면에 증열처리일자 및 검사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11.3 AQIS는 수출 30일 전 NPQS에 현지검역관의 파견을 요청하고, 파견인원, 기간, 예상수출량, 현지검역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4 현지검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측 지급기준에 따라 호주측에서 부담한다.

12. 수입검사

12.1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NPQS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12.1.1 검사증명서상의 기재사항

12.1.2 포장의 봉인상태와 파손여부

12.2 상기 “12.1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 또는 반송처리 된다.

12.3 상기 “12.1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NPQS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입 검사를 실시한다.

12.4 수입검사과정에서 [별표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2.4.1 살아있는 금지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조치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호주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

12.4.2 살아있는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당해 화물을 소독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한다.

13. 기타

13.1 본 요건 이외의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13.2 본 요건은 필요시 양국간 합의를 거쳐 개정 할 수 있다.

<별표1>

호주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병: 23종

- | | |
|------------------------------------|---|
| 1. <i>Asterina punctiformis</i> | 13. <i>Gloeosporium mangiferae</i> |
| 2. <i>Bipolaris hawaiiensis</i> | 14. <i>Mucor circinelloides</i> |
| 3. <i>Ceratocystis paradoxa</i> | 15. <i>Oidium mangiferae</i> |
| 4. <i>Chaetothyria tenuissima</i> | 16. <i>Pestalotiopsis mangiferae</i> |
| 5. <i>Coniella castaneicola</i> | 17. <i>Phomopsis mangiferae</i> |
| 6. <i>Cytosphaera mangiferae</i> * | 18. <i>Phytophthora heveae</i> |
| 7. <i>Dothiorella aromatica</i> | 19. <i>Pithomyces chartarum</i> |
| 8. <i>Dothiorella dominicana</i> | 20. <i>Pithomyces sacchari</i> |
| 9. <i>Dothiorella mangiferae</i> | 21. <i>Stemphylium vesicarium</i> |
| 10. <i>Elsinoe mangiferae</i> | 22. <i>Xanthomonas campestris</i> pv.
<i>mangiferaeindicae</i> * |
| 11. <i>Fusicoccum mangiferae</i> | 23. <i>Hendersonula</i> sp. |
| 12. <i>Gloeosporium lagenarium</i> | |

* 재배지에서의 예찰 및 방제가 요구되는 병

해충: 30종

- | | |
|---|--------------------------------------|
| 24. <i>Amblypelta lutescens</i>
<i>lutescens</i> | 32. <i>Bactrocera jarvisi</i> * |
| 25. <i>Amblypelta nitida</i> | 33. <i>Bactrocera kraussi</i> * |
| 26. <i>Aonidiella aurantii</i> | 34. <i>Bactrocera murrayi</i> * |
| 27. <i>Aonidiella orientalis</i> | 35. <i>Bactrocera neohumeralis</i> * |
| 28. <i>Aulacaspis tubercularis</i> | 36. <i>Bactrocera opiliae</i> * |
| 29. <i>Bactrocera aquilonis</i> * | 37. <i>Bactrocera tryoni</i> * |
| 30. <i>Bactrocera cucumis</i> * | 38. <i>Ceratitis capitata</i> * |
| 31. <i>Bactrocera fraunfeldti</i> * | 39. <i>Coccus viridis</i> |
| | 40. <i>Colgaroides acuminata</i> |

41. *Cryptoblabes adoceta*
42. *Deanolis albizonalis*
43. *Dirioxa pornia*
44. *Ephestia* sp.
45. *Epiphyas postvittana*
46. *Hemiberlesia rapax*
47. *Isotenes miserana*

48. *Lobesia* sp.
49. *Lymantria lunata*
50. *Nipaecoccus viridis*
51. *Selenothrips rubrocinctus*
52. ***Sternochetus mangiferae* ****
53. *Tirathaba* sp.

* 증열처리가 요구되는 해충

** 재배지에서의 예찰 및 방제가 요구되는 해충

※ 여기에 계기되지 않은 병해충이 도착지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
분류동정 및 위험분석을 거쳐 처분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2>

본 요건의 제11조(현지검사)에 대해서는 2~3년간 시행 후 재검토한다.

DRAFT